<2022.05.02.>
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

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후보자 설명자료

(남원, 임실, 순창 비례대표 지방의회)

더불어민주당
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
전라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

1 등록 자격

○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비례대표공원관리위원회 및 상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초의원 경선후보자로 결정된 자

2 경선지역 및 경선 기탁금

❑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(남원, 임실, 순창) 경선후보자 및 후보자별 경선기탁금

〈가나다순〉

연번	시군	선거명	경선인수	기탁금	후보자명
1	남원시	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	3	2,500,000	오창숙, 이숙자, 김종환
2	임실군		3	2,300,000	박귀순, 엄난희, 정일윤
3	순창군		3	2,300,000	김삼순, 김정숙, 오은숙

3 접수서류

- 경선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. **(대표경력 관련 증명서류 포함)**
- 공명선거 서약서 1부.
- 경선후보자 ARS투표용 경력 신청서 1부.
-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1부.
- **경선기탁금 납부확인증 1부.**

4 경선방법

○ 당원경선 : 권리당원 선거인단 전원(해당 지역)

* 권리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ARS투표
  - 강제적 ARS투표 : 1일(5회)

※ 관련 규정 :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(22.04.15) 승인 투표방법,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18조 내지 제22조

5 선거운동 방법

<table>
<tr><th>선거운동</th><th>가능 여부</th><th colspan="2">내 용</th></tr>
<tr><td>홍보물
(공보)</td><td>불가</td><td colspan="2">· 현장배포 불가, 우편발송 금지
(※웹자보 및 카드뉴스 형식으로 대체)</td></tr>
<tr><td>합동연설회
(토론회)</td><td colspan="3">전북도당 주최 토론회 실시하지 않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문자
메세지</td><td rowspan="2">자동
동보
불가</td><td rowspan="2">당에서 일괄
발송 예정</td><td>· 후보자 홍보 카드뉴스
총1회 발송 : 당에서 제작하여 발송 예정
(※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인 경선선거인에게만 발송)</td></tr>
<tr><td>· 문자 2회 발송으로 대체
☞ 경선일 D-1일, 경선 당일
(※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인 경선선거인에게만 발송)</td></tr>
<tr><td>전자우편
(E-mail, SNS 등)</td><td>가능</td><td colspan="2">· 대행업체 위탁을 제외하고 제한 없이 발송 가능</td></tr>
<tr><td>말, 전화,
휴대전화, 온라인
(홈페이지 등)</td><td>가능</td><td colspan="2">· 제한 없이 가능함
※ 말 : 확성기 또는 옥외집회 일반대중 상대로 불가함
※ 전화 : 송·수화자간 직접통화만 가능(음성녹음 불가)
※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·동영상 등 게시 가능</td></tr>
<tr><td>명함</td><td>가능</td><td colspan="2">·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금지장소를 제외하고 제한 없이 가능
*제60조의3, 제2호</td></tr>
</table>

6 ARS투표용 대표경력 허용기준

1) 전·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: 불허 (7회 지선 공관위, 21대 총선 공관위+선관위 적용)

※ 후보자의 인지도 보다 전·현직 대통령의 실명이 조사결과에 영향이 큰 우려

2) 경력 입증이 가능한 경력만 인정 (해당 기관·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)

-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, 급여 수급 경력만 인정 / 경력 2개 합25자 이내("(전)", "(현)" 25자 이내 산입하지 아니함)

(※ 직렬 변경에 따라 개별 직함으로서의 경력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관·단체에서의 총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時 원하는 경력을 사용할 수 있음)

- 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경우 경력을 인정함

3) 임의적이거나 임시·한시적인 경력 : 불허

- 기관 및 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하더라도 존속 1년 미만인 기구·단체의 경력
- 존속 1년 이상의 기구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임의단체와 모임은 불허

4)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선거기구, 후원단체, 연구단체, 기념사업회 등의 영리·비영리단체의 대표경력 : 불허

- 다만, 재직증명, 법인등기부상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특정정치인의 이름은 포함할 수 없고,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5)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법적등록 명칭 또는 공식 명칭 사용

- 청와대 근무경력은 '대통령비서실 ○○○'으로 통일함
- 김대중정부, 노무현정부, 문재인정부, 국민의정부, 참여정부, 촛불정부 등 : 불허
- ○○○선대위, ○○○선거대책위원회, ○○○선대본 등 : 불허
- ○○○를사랑하는모임 회장, ○사모 카페 운영자, ○사모 지부장 등 : 불허
- ○○○대통령후보 유세단장, ○○○대통령후보 특보 : 불허
- ○○○시·도지사, ○○○당대표, ○○○국회의원, ○○○장관 정책특보 등 : 불허

→ 국회의원 보좌관,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: 허용

6) 소속기관·단체명과 직함(공식적인 직위)은 함께 사용

- 경실련 임원 : 불허 → 경실련 사무처장 등

7) 학력, 학위의 경우 학교명과 함께 사용

- 정치학 박사 : 불허 → ○○대 정치학 박사

8) 출마경력 時 당명, 선거구명을 함께 사용 : 예비후보 불허

- 종로구의회예비후보, 민주당 후보, 19대국회의원후보 : 불허

→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,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,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

※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, 상대 후보와 합의할 시 특정 경력을 대표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음